

이 보도자료는 2024. 11. 21.(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h2 style="text-align: center;">서울동부지방검찰청</h2>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손진욱 전화 02-2204-4201</p>	<h2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2>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1. 21.(목)</p>
<h3 style="text-align: center;">제 목</h3>	<h2 style="text-align: center;">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일부를 중국 회사에 누설한 A社 전직 연구원 구속기소</h2>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24. 11. 21.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社가 중국 소재 공장을 중국 B社에 매각 하자 중국 B社의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A社의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사진 촬영하여 유출하고, 유출한 자료 중 영업비밀 일부를 중국 B社의 계열사 임직원에게 누설한 前 A社 연구원을 직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필수적인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자료

- 서울동부지검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메일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 ▲ 피고인이 무단 촬영하여 유출한 영업비밀을 추가로 확인하여 인지하고,
 - ▲ 유출 자료 중 국가핵심기술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산업 기술보호법위반죄를 추가 의율하였으며,
 - ▲ 방대한 분량의 이메일, 중국어 위챗 대화, 중국어 문건 등을 상세 분석하여, 피고인이 중국 B社 계열사로 이직 후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제조 자동화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A社의 자료를 B社 계열사 임직원에게 번역하여 보고하는 등으로 실제 활용한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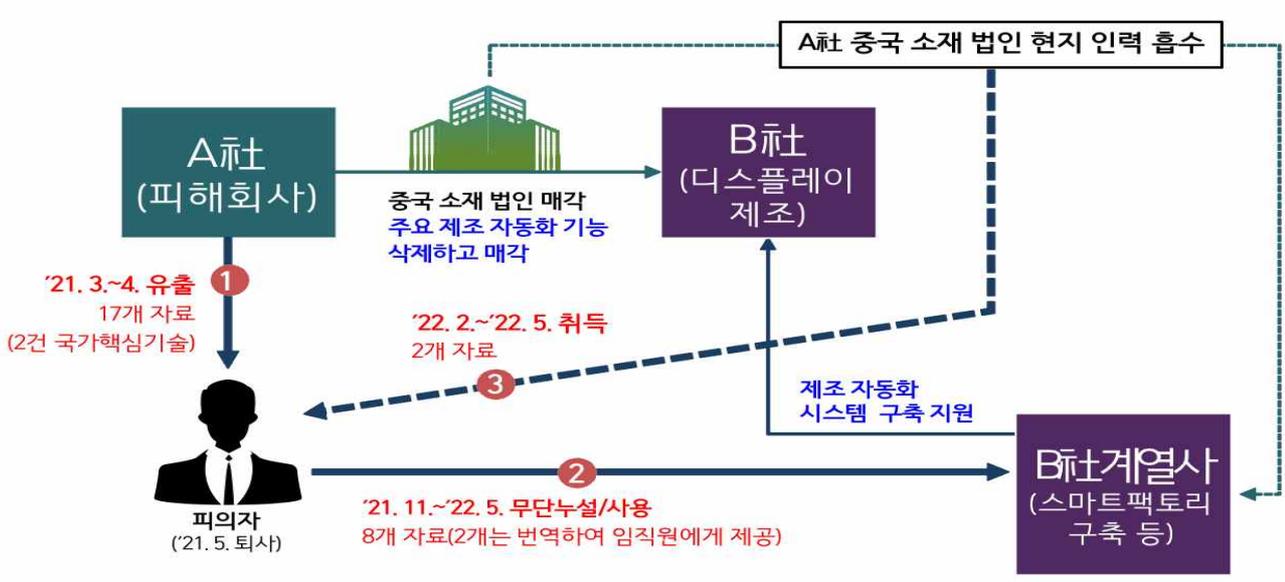
● 피고인

- C○○(57세, 구속, 前 A社 수석연구원)

※ C○○은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社 수석연구원 및 A社의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A社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B社에 매각하는 업무 수행

● 공소사실 요지

- ① (취득·유출) '21. 3.~4.(이직 직전) A社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2개는 국가핵심기술)를 무단 사진 촬영 [산업 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 ② (누설·사용) '21. 11.~'22. 5.(이직 후) 위 유출 자료 중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 자료로 만들어 8회에 걸쳐 B社의 계열사 임직원에게 전송 [부정경쟁방지법위반(국외누설등)]
- ③ (취득) '22. 2.~'22. 5.(이직 후) B社 계열사 직원으로부터 A社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개를 전송받음 [부정경쟁 방지법위반(국외누설등)]



II

주요 사건 경과

- '21. 3. A社, 중국 생산 법인을 중국 B社에 매각
 - ※ A社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법인 매각시 B社에 기본적인 제조자동화 기술 사용권만 제공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공하지 않음
- '21. 3.~4. 피의자, A社 영업비밀 사진촬영
- '21. 5. 피의자, B社의 계열사로 이직
 - ※ '21. 5. A社를 퇴직하고 B社의 계열사로 이직하여 B社의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의 제조 자동화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
- '21. 11.~'22. 5. 사진촬영 자료 일부를 B社 계열사 임직원에게 누설
- '23. 3. 서울경찰청 사건 불구속 송치 ※ 구속영장 판사 기각
- '23. 7.~'24. 5. 피의자 이메일 압수 및 계좌 확인, 경찰 압수물 추가 분석, 유출 자료 중 국가핵심기술 자료 확인
- '24. 5. 피의자 주거지 압수(추가 유출자료 확보)
- '24. 11. 1.~4. 구속영장 재청구, 발부
- '24. 11. 21. 피의자 구속 기소

III

수사 결과

① 촬영 시점 이전부터 중국 B社와 이직 협상 진행

- 피고인은 A社의 중국 법인을 중국 B社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A社 몰래 B社 측 임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이직을 협의하였음
 - 피고인은 “한국 정부와 A社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은 A社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이직한다는 사실이 A社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하였음
- 실제로 B社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하였음

②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사진 촬영

- 피고인은 이직 직전 주거지에서 A社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열람한 후 이를 다른 휴대기기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였음
- 피고인은 B社 계열사로 이직한 후 촬영한 자료들 중 일부 영업비밀을 B社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직접 전송하거나 중국어로 번역, 가공하여 전송하였음

유출된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 ▶ 유출된 영업비밀은 전체 생산 공정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적인 분석 정보 제공을 통해, 최적의 생산활동(제어, 지시, 통제 등)과 품질 혁신 활동(수율, 품질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실시간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으로서, 자동화 공장(스마트 팩토리)의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개념
- ▶ 이 사건 유출된 자료들은, ▶A社가 중국 법인을 B社에 매각하면서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기술자료이며, ▶중국 법인에는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기술자료들임

- 유출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부분(투자비 절감액, 직접 이익)만 합산하여도 약 2,4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도 평가되고 있음

③ 중국 회사 이직 이후 영업비밀 관련 업무 수행

- 피고인은 B社의 계열사 입사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직후 곧바로 B社 계열사 직원으로부터, “A社가 B社에게 매각한 중국 공장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음
- 피고인은 B社 공장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A社의 영업비밀을 번역하여, ‘○○ 지능형 제조 발전 - 공장사례 공유(A社)’, ‘○○ 데이터 통합방향 - 사례 공유(A社)’ 등의 내용으로 가공하여 B社 측에 제공하였음

IV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① 사경 송치 이후 충실한 보완수사 실시하여 피고인을 구속 기소함

- 동부지검은 사경 송치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이메일 등을 압수하여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기존 압수물을 재검토·분석하였으며, 중국어 위챗 대화, 중국어 문건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음
- 검찰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무단 촬영하여 유출한 영업비밀을 추가로 확인하여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 중 국가핵심기술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고 범정형이 높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를 추가 의율하였음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

- 또한 피고인이 중국 B社の 계열사로 이직한 후, B社の 제조 자동화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A社가 B社에 매각한 중국 공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제조자동화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 등)를 수행하였음을 확인
- 피고인이 A社の 영업비밀을 B社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B社 계열사 직원에게 말하고, 압수수색 이후에도 수사상황을 B社 측에 알려주면서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변호사 비용도 보전받기로 한 사실까지 확인

② 검찰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

-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
- 또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예정 ☑